

뉴질랜드 사업 길라잡이



헤스켓 헨리가 여러분의 뉴질랜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뉴질랜드는 많은 투자기회가 있는 나라입니다. 뉴질랜드에 처음 투자하실 때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규제나 조세분야는 때로 상당히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뉴질랜드에서 가장 유명하고 전통 있는 상법전문 로펌 가운데 하나인 헤스켓 헨리는 해외 고객 자문으로 좋은 평판을 얻고 있으며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랫동안 국제기업, 전문가, 해외 로펌을 포함하는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오면서 고객과의 장기적 관계형성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무엇보다도 고객의 수요, 투자 목적 및 전략의 이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로펌을 선택하실 때 고객은 꼭 맞는 회사를 선택했다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객의 관심사항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위해 일하며 업무 진행 시 편안함을 주면서 장기적 관계형성을 추구하는 로펌을 선택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에 정통함은 물론 고객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드리는 전문가라야 합니다.

헤스켓 헨리는 장기간에 걸친 고객과의 신뢰관계를 통해 고객의 사업목표를 이해하고 성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자료는 뉴질랜드의 투자환경을 법률적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설명하는 가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투자는 반드시 저희의 자문을 받으신 후에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특히 최근에 뉴질랜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본 자료에 있는 법률 사항이나 규제는 앞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헤스켓 헨리는 뉴질랜드 투자와 기타 법률 문제 상담을 환영합니다. +64 9 375 8709 로 전화해 주세요.

이학준 변호사 (Hak Jun Lee)

Senior Associate, Head of Asia Practice 전화: +64 9 375 8685 휴대폰:+64 274 541 328 이메일:

hakjun.lee@heskethenry.co.nz 주소: Level 14, PwC Tower, 188 Quay Street, Auckland 1010, New Zealand



목차

1.	일반사항	1
2.	회사 설립	1
3.	기업 인수	3
4.	부동산 취득	4
5.	조세 제도	7
6.	통화규제, 자본 및 이윤의 이전, 투자 장려	10
7.	공정거래법 및 규정(Competition law and regulations)	11
8.	지적재산권 보호	12
9.	노동과 고용	14
10.	기타 상법	17
11.	이민	19
12.	법률체계와 분쟁해결	21
13.	중요사항	22

뉴질랜드 사업 및 투자의 법률 요건

1. 일반사항

- 1.1 뉴질랜드는 특별한 나라로 지리적, 경제적 특성과 선진 법률 및 금융시스템이 결합된 남태평양 지역에서 돋보이는 나라입니다. 뉴질랜드 경제는 시장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법률, 정부 정책, 외환 및 금융시장 등 직,간접적 수단을 통해 외국인투자를 장려하고 있는데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의 높은 외국인 투자가 이를 방증합니다.
- 1.2 뉴질랜드는 태평양 서남쪽에 위치한 두 개의 큰 섬과 다수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국토면적은 268,000 km²로 영국이나 일본과 비슷한 규모로 현재 인구는 약 470 만명입니다.
- 1.3 수도 웰링턴에 중앙정부가 있는 단원제의 의회 민주주의 국가로 3 년마다 총선이 치러집니다. 1996 년부터 혼합비례대표제도(MMP)로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데 최대 의석 수는 120 명이며 초과 의석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독일의 현재 선거제도와 유사합니다.
- 1.4 사업 및 회사 운영에 관련된 모든 법률은 의회가 제정하고 정부기관이 시행합니다.
- 1.5 뉴질랜드 법체계는 잉글랜드 및 다수 서구 국가와 유사하게 관습법에 기초합니다. 대부분의 민사와 형사 사건은 지방법원에서 심리하고 고등법원은 민사사건과 심각한 형사사건을 주로 다룹니다. 항소법원(Court of Appeal)과 특정 사건만 심의하는 대법원(Supreme Court)등 두 개의 항소법원이 있습니다.

2. 회사 설립

2.1 외국기업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뉴질랜드에 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 외국기업의 뉴질랜드 지사 등록
- 자회사 법인 설립
- 뉴질랜드 등록 회사를 인수하여 외국기업의 자회사화

뉴질랜드 내에 외국기업 등록

2.2 뉴질랜드에 지사를 등록하려는 외국기업은 먼저 법인등기소(Registrar of Companies)에 회사명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업을 개시한 때로부터 10 영업일 내에 회사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며 해당 외국기업의 회사명, 법인 등록 국가, 이사들의 성명과 거주지 주소, 뉴질랜드내 사업장 주소, 회사를 대리하여 문서 수령과 자료 제출을 맡은 최소 1 인의 뉴질랜드 거주 개인 또는 법인의 성명과 물리적 주소를 작성, 제출 합니다. 회사등록 신청 시 외국기업의 정관도 함께 제출합니다.

자회사 법인 설립

2.3 뉴질랜드에 설립하는 자회사는 최소 1 인의 주주와 이사가 있어야 하며 문서 수령을 위한 뉴질랜드 주소와 등록 사무소의 뉴질랜드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뉴질랜드에 설립된 회사는 뉴질랜드나 시행국가(enforcement country)에 최소 1 인의 이사를 보유해야 합니다. 시행국가에 거주하는 이사는 반드시 그 나라의 등록 회사의 이사여야 합니다(해외기업 지사는 제외). 시행국가의 지정은 규정에 따르며 현재 유일한 시행국가는 호주입니다.

- 2.4 뉴질랜드 회사의 주식은 액면가나 명목가격이 없고 자본금의 최저기준도 없습니다. 회사법(Companies Act 1993)에 따라 이사들은 신규 발행 주식 가격을 결정하고, 그 가격이 회사와 주주 모두에게 타당한가를 판단합니다.
- 2.5 지사 설립 신청의 첫 단계는 회사명 확보 신청입니다. 회사명 승인 받은 후, 법인 설립에 필요한 아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각 이사의 선임 동의서
 - 각 주주의 선임 동의서
 - 정관을 두기로 했을 경우 회사의 정관 (정관의 부재 시 회사법(the Companies Act 1993)의 기본 조항이 우선한다)
 - 문서수령 주소와 등록된 사무소 주소(모두 뉴질랜드의 물리적 주소), 등기소의 서류전달을 위한 물리적 주소
 - 주주 및 이사의 성명과 주소, 각 이사의 생년월일과 출생지
 - 이사가 시행국가에 거주할 경우 그 이사가 시행국가에서도 이사로서 있는 회사의 세부 내용
 - 설립하려는 지사의 최종 모회사에 관한 정보.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국가명, 기타 정해진 내용
 - 이사 및 주주의 신원과 주소 검증을 위한 자료 등, 뉴질랜드법인등기소가 요구하는 기타 자료

해외기업의 뉴질랜드 회사 등록 또는 자회사 설립 및 인수

- 2.6 뉴질랜드 내에 외국기업 등록을 통해 지사를 설립할 것인지, 뉴질랜드 자회사를 설립 또는 인수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법률 구조 및 과세 상황(뉴질랜드 및 외국)을 비롯, 여러 상업적 조건을 토대로 이뤄져야 하며 다음 사항들도 고려해야 합니다.
- 재무보고의 의무 (아래 내용 참조)
 - 자료보관 및 법적 요건으로 인해 자회사는 지사보다 많은 행정업무가 따르며 회사법 1993 에 따른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특히 유한책임 자회사(limited liability subsidiary)를 뉴질랜드에서 운영할 때는 책임에 제한이 있지만 지사는 외국 모기업과 분리된 별도 법률 주체가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회사 형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문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재무제표의 작성

- 2.7 뉴질랜드 회사는 정해진 경우가 아니면 일반 재무제표의 작성의무가 없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대기업
 - 공기업
 - 뉴질랜드에서 사업하는 외국의 대기업
 - 주주 10 인 이상 회사 (규정적용을 면제받은 경우는 제외)
 - 주주가 10 인 미만이지만 규정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회사

- 2.8 뉴질랜드 컴퍼니스 오피스 (New Zealand Companies Office)에 반드시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 회사에 대한 요건이 변경되었으며 외국 대기업은 일반적으로 이전과 같이 컴퍼니스 오피스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허가

- 2.9 외국인투자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아래 3 항 참조) 회사의 이름(자회사, 지사 모두)을 법인등기소에 등록하는 것 외에 정부 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없으며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이름이 먼저 등록된 경우가 아니면 허가는 즉시 이뤄집니다.
- 2.10 외국기업의 회사 운영에 대한 규제는 거의 없지만 외국인투자법 (Overseas Investment Act 2005)과 외국인투자규정 (Overseas Investment Regulations 2005) 에 따라야 합니다. 본 규정은 외국인(overseas persons)의 뉴질랜드 투자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현행 외국인투자법은 외국인투자법 1973(Overseas Investment Act 1973)을 대체하여 2005 년 8 월에 발효되었습니다.
- 2.11 외국인(overseas person)에 대한 정의는 외국인투자법 제 7 항에 기술되어 있으며 그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 뉴질랜드 국적자가 아니며 뉴질랜드에서 통상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자
 - 뉴질랜드 밖에서 설립된 법인, 또는 뉴질랜드 자회사이나 외국 법인이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
 - 어떠한 종류의 주식이든 전체의 25%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한 법인
 - 법인 지배권의 25% 이상의 구성을 통제할 권한을 외국인이 갖고 있는 법인
 - 법인의 모든 회의에서 외국인이 25% 이상 의결권을 행사 또는 통제하거나 지분의 25% 이상을 외국인이 보유한 법인
- 2.12 조업쿼터에 대한 투자나 일부 민감한 부동산 구입 등 일부 사업상 거래에는 항상 허가(consent)가 요구됩니다. 외국인 투자금이 1 억 달러(호주 비정부 투자자의 경우 5 억 1 백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한 별도의 허가는 필요치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3 항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3. 기업 인수

외국인투자법(OI Act)과 외국인투자규정(OI Regulations)

- 3.1 외국인투자규정에 따라 외국인이 일정 조건의 투자를 할 때는 뉴질랜드 외국인투자사무소(New Zealand Overseas Investment Office)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상이 토지가 아닌 경우 투자에 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연간 90 일 이상 (단독 또는 합작) 운영하는 사업을 위해 회사를 설립할 때 총 지출액이 1 억달러를 초과할 때
 - 뉴질랜드 법인의 25% 이상의 소유 또는 지배권 취득 시 그 가치가 1 억 NZ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즉, 인수대상 법인의 주식 가치, 또는 인수 거래 금액, 또는 인수대상 법인이나 그 법인이 25% 이상 소유하는 자회사의 자산 합계가 1 억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 외국인이 이미 25% 이상을 소유 또는 지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비율을 늘리고자 할 때
 - 영업권 및 기타 무형자산을 포함한 뉴질랜드 내 사업용 부동산 취득 금액이 1 억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 토지를 보유한 회사의 주식을 외국인이 취득할 때, 외국인투자규정에 따라 허가가 필요한 경우, 아래 제 4 항(부동산 취득) 내용이 적용됩니다.

- 3.2 비토지 자산 취득의 1 억달러 허가요건은 특정 호주 투자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17 년 1 월 1 일, 비정부 호주인 투자 허가 기준이 5 억 1 백만 달러로 증액되었습니다(호주 국민이나 법인으로 실제 호주에서 상당한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호주 또는 뉴질랜드 투자자가 75% 이상의 지배력을 보유하는 호주나 외국 정부 투자자가 아닐 때). 기준액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됩니다. 호주 정부투자자 (호주 정부 또는 호주 정부가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 또는 지배권을 행사하는 호주 내 법인 또는 지사)의 기준액은 1 억 5 백만 달러로 증액되었으며 매년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됩니다.
- 3.3 허가가 필요한 투자의 경우,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에게만 투자가 승인됩니다. 외국인 개인 또는 개인이 아닐 경우 관련 외국인을 통제하는 사람들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해당 투자와 관련된 사업경험 또는 상당한 지식 보유
 - 해당 투자에 사용할 자금 증명
 - 캐릭터에 문제가 없을 것
 - 이민법(Immigration Act 2009) 제 15, 16 항에 해당되지 않을 것(범죄나 테러 이력으로 동 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
- 3.4 외국인투자의 25% 기준은 뉴질랜드 정부가 외국인투자의 적정선을 한정하려는 의도가 아니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 3.5 모든 산업 분야에서 외국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는 투자 승인이 가능하지만, 뉴질랜드 조업 쿼터와 같이 일부 외국인 보유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3.6 뉴질랜드 내 외국인투자관련 정책은 재정부 장관(Minister of Finance)이 말지만 토지이용은 국토부장관 (Minister for Land Information), 조업쿼터 취득은 수산부장관 (Minister of Fisheries)과 함께 정책을 수립, 시행합니다.
- 3.7 외국인투자규정은 승인된 투자에 대한 집행 절차, 수수료, 보고 및 자금요건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습니다.

4. 부동산 취득

부동산 취득 허가

- 4.1 외국인투자사무소(OIO)는 특정 토지의 취득에 관한 규제를 맡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사무소의 허가가 필요한 토지와 토지의 지분의 종류는 외국인투자법에 기술되어 있으며 그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 5 헥타아르를 (hectare) 초과하는 도시 외 지역 토지
 - 대부분 도서지역의 토지
 - 특정 섬, 보호지역, 사적지 및 유적지, 호수 등 민감 토지(sensitive land)를 포함 또는 이들과 인접한 0.4 헥타아르를 초과하는 토지
 - 해안선 포함 또는 인접한 0.2 헥타아르를 초과하는 토지
- 4.2 민감 토지에 속하거나 인접하지 않는 한 뉴질랜드에서의 상업 또는 산업 용지 구입에는 일반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르지 않습니다.
- 4.3 토지구입에 관련하여(4.1 세부내용 참조) 아래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 외국인투자규정은 도시지역과 농지 모두에 적용됩니다.

- 토지의 취득 목적은 무관합니다.
-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이 있는 자)이 이미 자신이 보유중인 토지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는 별도 승인이 필요합니다.

4.4 회사인수시 신청자의 자격(관련 사업경력, 지식, 자금, 캐릭터, 이민법 제 15,16 항 요건)외에 아래 요건에도 부합해야 합니다.

- 외국인 또는 개인이 아닌 경우 그 투자자에 대해 지배력을 가진 자는 통상적으로 뉴질랜드에 영구 거주하거나 거주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 토지 투자계획(투자 주목적)이 뉴질랜드에 유익하거나 유익할 가능성이 있으며 도시 지역이 아닐 때는 그 유익이 크고 명확하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 토지가 농지 또는 농지를 포함하거나 그와 관련된 권리일 때는 외국인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해당 농지나 물건에 대해 시장에서 공개적인 매도 노력을 기울였어야 합니다.

4.5 주무장관은 투자가 뉴질랜드에 상당하고 명확한 이익을 가져오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있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하며 이 때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투자가 다음의 효과를 창출하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 일자리 창출이나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을 시 없어질 수 있는 일자리의 유지효과
 - 신기술이나 신사업기법 도입
 - 뉴질랜드 수출 증가
 - 뉴질랜드내 시장경쟁 촉진, 효율 및 생산성 증가, 국내 서비스 향상
 - 개발에 투입될 추가 투자 유치효과
 - 뉴질랜드 1 차 산업 생산물의 처리량 증가
- 다음 사항의 이행을 위한 적절한 장치의 보유 여부
 - 중요 토착 동식물 서식지의 보존 및 환경 개선
 - 송어, 연어, 보호 야생동물의 기존 서식지 보호 및 개선과 서식처로의 공공의 도보 접근성 제공, 보존, 개선
 - 관련 토지내 역사유산의 보존 및 환경개선
 - 관련 토지(모든 부분)로의 도보 접근성 제공, 보존 및 개선
- 관련 토지가 해안, 해저, 강 또는 호수 바닥이거나 그러한 지역을 포함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해당 해안, 해저, 강 또는 호수바닥을 정부에 양도하기로 하는 지의 여부
- 기타 외국인투자규정에 기술된 사항

4.6 외국인투자규정은 주무장관이 민감 토지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뉴질랜드에 유익하거나 유익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주무장관은 해당 투자가 뉴질랜드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오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있는지, 외국인의 과거 뉴질랜드내 투자 여부, 정부 정책이나 전략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외국인투자규정은 외국인투자가 뉴질랜드 정부의 민감 토지의 '전략적 사회기반시설(*strategically important infrastructure*)' 의 활용에 도움이 되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있는지 주무장관이 확인하도록 2008 년 3 월에 개정되었습니다. 그 외 외국인투자에 의해 뉴질랜드의 경제적 이익이 촉진되는 지, 외국인투자에 뉴질랜드인의 감독 및 참여 가능성의 정도 등을 고려합니다.

- 4.7 2012년 2월, 고등법원의 *Tiroa E and T Hape B Trusts and another v Chief Executive of Land Information and others* [2012] NZHC 147 사건의 판결은 외국인투자사무소(OIO)와 주무장관이 민감 토지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유익성을 판단할 때 적용할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판결 이전까지는 OIO는 투자 이전 상태와 투자 이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를 비교하여 외국인투자의 국익 부합여부를 평가했습니다. 고등법원은 외국인투자사무소와 주무장관이 평가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고 외국인투자의 유익성 평가 시 외국인투자가 승인되지 않았을 경우도 고려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4.8 이러한 법리해석에 따라 외국인투자자는 다른 잠재투자자(뉴질랜드 거주자나 외국인투자자)의 존재여부와 그들의 투자가 가져올 이익에 대한 검토는 물론 외국인투자사무소와 주무장관에게 자신의 투자가 다른 잠재투자자보다 많은 이익을 뉴질랜드에 가져올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잠재투자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한 평가는 적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등록요건

- 4.9 토지이전에 관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토지 매입자와 매도자는 토지를 양도할 때 뉴질랜드 납세자번호(IRD 번호)와 기타 세부사항을 제출합니다(주 거주 주택은 예외 (외국인이나 트러스트의 경우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음))
 - 뉴질랜드가 아닌 국가에서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는 IRD 번호에 해당하는 해당 국가의 납세자번호를 제출해야 합니다.
 - IRD 번호가 없는 외국인은 번호 발급 신청 시 뉴질랜드 은행계좌를 보유해야 합니다.

토렌스 토지등기제도(Torrens land registration system)

- 4.10 뉴질랜드의 토지등기는 토렌스 토지등기제도로 운영되며 통상 모든 토지의 구획은 각각의 크기와 소유자를 기록한 소유권(title)을 갖습니다. 정부는 소유권의 정확성을 보증하며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열람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등기는 더 이상 물리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전산으로만 관리합니다.

토지 매매계약

- 4.11 뉴질랜드 법에 따라 모든 토지 매매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당사자의 서명이 있어야 유효합니다.

자원관리법(Resource Management Act 1991)

- 4.12 자원관리법은 토지, 수자원, 광물, 해안선, 공기 등 자연자원의 사용에 관한 법률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동 법은 서문에서 "자연자원과 물리적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sustainable management of natural and physical resources*)"의 촉진을 목표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용지를 위한 대규모 개발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여러가지 승인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투자제안서에 대해 동 법과 지방정부의 개발계획, 전문가의 법률의견과 조언을 토대로 독립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합니다. 정부는 보다 효율적인 자원관리 시스템과 승인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경제발전을 촉진할 목적으로 동 법의 개정을 검토 중이며 관련 요건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건축법(Building Act 2004)

- 4.13 모든 건축물에는 건축법이 적용되며 건물의 신축에 있어 안전한 거주와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마오리 토지보유권(Land claims)

- 4.14 외국인투자법과 외국인투자규정에 따른 허가와 별도로 뉴질랜드내 특정 토지는 와이탕이조약법(Treaty of Waitangi Act 1975)의 마오리 원주민의 토지보유권 규정에 따라 정부로 반환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별도 표식(tag)이 없는 개인소유 토지는 정부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표식은 토지소유권에 등재되어 있으며 잠재구매자가 요구 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환되는 토지의 경우 정부는 시세에 따른 가격을 지불합니다.

5. 조세 제도

소득세

- 5.1 기본적으로 뉴질랜드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해 과세되는데 반해 비거주자는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 5.2 아래의 경우 세법상 뉴질랜드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 해외 거주지 유무와 상관없이 뉴질랜드에 영구적 거주지가 있을 때
 - 12 개월 기간 중 183 일 이상 뉴질랜드에서 거주할 때
- 5.3 회사는 아래에 해당되면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합니다.
- 뉴질랜드에 등록된 회사
 - 본사가 뉴질랜드에 있는 회사
 - 핵심 경영조직이 뉴질랜드에 있는 회사
 - 의사 결정내용의 적용대상과 상관없이 이사의 회사 통제가 뉴질랜드에서 이뤄지는 회사
- 5.4 아래의 수입은 뉴질랜드에서 창출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전적 또는 부분적으로 뉴질랜드에서 이뤄진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입
 - 뉴질랜드의 부동산 처분을 통해 발생한 수입
 - 전적 또는 부분적으로 뉴질랜드에서 이뤄진 계약을 통해 발생한 수입
- 5.5 2011년 4월 1일 기준, 뉴질랜드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저소득 가정을 위한 별도 규정 있음)
 - NZ\$14,000 이하: 10.5%
 - NZ\$14,001~NZ\$48,000: 17.5%
 - NZ\$48,0001~NZ\$70,000: 30%
 - NZ\$70,001 이상: 33%
 - 모든 회사는 28%의 균일 세율 적용
 -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로열티 등 특정 형태의 비거주자 수입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세가 부과됩니다.
- 5.6 비거주자에게 부과하는 원천징수세와 관련하여 아래 예외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 뉴질랜드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된 모든 국가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15%입니다.
 - 뉴질랜드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된 대부분 국가 거주자의 이자와 로열티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입니다.

- 특정 경우에 한해, 이자수입에 대하여 비거주자 원천징수세를 대신하여 이자수입의 2% 부과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관련 외국인 지급금에는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 5.7 뉴질랜드는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중국, 칠레, 체코공화국, 덴마크, 피지, 핀란드, 프랑스, 독일, 홍콩, 인디아,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파푸아 뉴기니, 필리핀, 폴란드, 러시아, 사모아, 싱가포르, 남아공,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태국, 대만, 터키, 아랍 에미레이트, 미국, 영국, 베트남과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 5.8 뉴질랜드 회사가 자신과 무관한 외국 회사로부터 자금을 대출받고 채권자가 뉴질랜드내 정해진 주소가 없다면 그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비거주자 원천징수 대신 지불이자 2%를 뉴질랜드 회사가 부과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뉴질랜드 회사는 국세청에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받은 회사는 상황과 채권자의 선호에 따라 부과금 납부나 비거주자 원천징수 가운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납입이자에 따른 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은 범위까지 비거주자 원천징수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5.9 이전가격 (transfer pricing)과 과소자본법(thin capitalisation rules) 규정이 적용되며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뉴질랜드로 오가는 상품과 용역의 공급에 따른 이전가격은 독립기업간 거래가를 적용합니다.
 - 과소자본법(thin capitalisation rules) 규정에 따라 단독 비거주자 또는 복수 비거주자가 회사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거나 통제하는 회사는 총부채가 총자산의 60%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자비용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GST)

- 5.10 GST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상품과 용역의 가격에 15%를 과세하는 GST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간접 소비세입니다.
- 5.11 GST는 납세활동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상품과 용역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수입물품에 대해서도 부과됩니다. GST를 등록한 자는 과세대상이 되는 상품과 용역을 공급할 때(판매) GST를 부과해야 하며 납세활동 과정에서 납입 GST는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 GST와 부과 GST의 차액만큼 국세청에 GST를 납입하거나 환불 받습니다.
- 5.12 다음의 상품 및 용역은 GST가 면제됩니다.
- 금융 서비스
 - 주거용 주택 임대
 - 수출 선박
 - 외국선적의 유람선
 - 가정용품
 - 해외에서 구매한 서비스
 - 인터넷 판매
 - 비경쟁 보상금 (restraint of trade)
 - 뉴질랜드 외에서 이루어진 서비스

- 임시 수입물품
- 뉴질랜드를 오가는 상품과 인원의 수송
- 비영리단체가 기증하는 상품과 용역
- 귀금속

5.13 다음 품목은 GST 세율을 0%로 합니다.

- 수출물품
- 해외에 위치한 물품
- 영업 지속(going concerns) 조건으로 처분하는 사업체 매매
- 새로 정련된 귀금속
- 수출되는 서비스
- 소비세와 석유세가 부과되는 상품 및 용역의 공급
- 지정된 통신 서비스 제공
- 개발허가나 개발분담금 조건에 따른 토지공여
- 기업간 금융서비스 제공
- GST 등록자간 거래내용에 토지가 포함되고 토지의 취득목적이 과세대상이 되는 상품 및 용역의 제공이면서 그 토지를 구입자나 관계자의 주 거주지로 사용하지 않을 때

5.14 자동차, 연료, 주류, 담배 등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세 형태로 추가 간접세가 부과됩니다.

관세와 소비세

5.15 뉴질랜드 정부는 지정된 수입 상품에 대해 관세와 소비세를 부과합니다. 세율은 상품 생산지와 종류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므로 상품의 수입, 해외 조립 목적의 부품 수출, 조립제품의 재수입을 하는 회사는 뉴질랜드 세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급부세(Fringe benefit tax)

5.16 회사가 직원으로 하여금 자동차를 개인적으로 사용케 하거나 여가활동을 위해 제공할 때 또는 보조금 지급, 상품과 용역의 할인, 저금리 대출과 같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부가급부에 대해 부가급부세(FBT)를 부과합니다.

인지세

5.17 뉴질랜드 내 거래에는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특히 토지 양도, 임대, 주식 양도 및 담보물권에 대해서도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capital gains)

5.18 거래를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한 경우처럼 일부 토지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식거래를 통한 차익은 거래를 업으로 하거나 재판매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했다고 간주될 경우 과세됩니다.

5.19 세법(Taxation Act 2015)의 주거용 토지의 단기거래(Bright-line Test for Residential Land)규정에 따라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한 때로부터 2년 내 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은 과세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판매자의 주 거주용 주택이거나 재산 분할, 상속에 의한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증여세(Gift duty)

- 5.20 2011년 10월 1일자로 증여세 제도가 폐지되어 뉴질랜드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세(Death duties)

- 5.21 뉴질랜드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6. 통화규제, 자본 및 이윤의 이전, 투자 장려

외환정책

- 6.1 뉴질랜드는 외환거래가 대체로 자유로운 편입니다. 1984년 말, 대부분의 외환규제가 폐지되었으며 1985년 3월부터 '키위'달러로 불리는 뉴질랜드 달러는 완전 변동환율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6.2 규제가 없는 외환거래로 뉴질랜드 경제에는 다음과 같은 상당한 영향이 있습니다.
- 등록된 은행을 통해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습니다(UN 제재, 뉴질랜드 재정거래 보고규정 또는 테러방지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 기준 적용)
 -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 배당을 제약 없이 비거주자에게 송금할 수 있습니다(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와 위 5항의 과세 적용)
 - 금융 이익이나 이익의 자본전입을 포함하여 외국자본을 승인 없이 본국에 송금할 수 있습니다.
- 6.3 뉴질랜드는 외국인투자법과 외국인투자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위 3,4항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 6.4 자유무역 원칙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운영되는 사업에 따라 혜택을 부여하지는 않으나 관광이나 상품수출 분야(외화수입에 직접 기여)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은 뉴질랜드 관광청(Tourism New Zealand)이나 무역협회(New Zealand Trade and Enterprise) 등 해당 단체로부터 환영받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정부는 특정 분야 투자자에게 제한적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은행 및 금융업

- 6.5 상업적인 은행거래는 ANZ, ASB, Bank of New Zealand, Kiwibank, Hong Kong and Shanghai Bank, Westpac 등 대부분 등록 은행을 통해 이루어지며 다양한 서비스가 은행에 의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금융은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이뤄지며 대주주의 개인보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 6.6 빌딩 소사이어티 (building society), 상업은행(merchant banks), 트러스티 기업, 보험사, 크레딧 유니온, 농민은행(stock and station agents) 등 은행 외 다양한 대출기관과 금융사업자도 존재합니다. 투자자와 투자기관이 안심하고 금융시장에 참여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비은행권 금융사업의 양성을 위한 법률이 근래에 시행되고 있으며 동법은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금융사업자의 등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등록된 금융사업자 확인
 - 금융사업자에 대한 더욱 효율적인 감시와 평가
 - 금융사업자에 대한 쉬운 정보 접근성 제공
 -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적 요구에 참여
 - 범죄이력이 있거나 파산상태, 회사법, 유가증권법, 소비자법 등에 따라 경영참여가 금지된 자가 금융사업체를 소유하거나 이사, 고급 경영자의 직책을 맡을 수 없도록 차단

- 소비자의 정보접근을 돕는 종합적 금융분쟁 해결시스템 구축

6.7 주요 상업은행은 신용장, 환어음, 상업어음, 중장기 대출, 외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준비은행

6.8 준비은행은 뉴질랜드 중앙은행이며 준비은행법 (Reserve Bank of New Zealand Act 1989)과 부속법률에 따라 운영됩니다.

6.9 준비은행의 세 가지 주요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을 운영합니다. 법률에 따라 재정부장관과 준비은행 총재는 독립된 통화목표를 정합니다. 현재 통화정책의 목표로 연간 인플레이션을 1-3%로 잡고 있지만 보다 전반적인 정부의 경제적 목표도 함께 고려합니다.
- 건전하고 효율적인 금융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은행 등록과 규제, 은행의 운영과 재정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수행합니다.
- 다양한 지불 및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통화수요를 충족시킵니다.

금융시장

6.10 뉴질랜드 금융시장(순자산, 부채, 선물, 옵션)은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규제기관에 의해 통제되고 있습니다. 주식 및 증권 거래업은 필수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금융시장기구(FMA)의 규제를 받습니다. 뉴질랜드의 등록 주식시장은 NZX 가 유일하며 주요 주식거래(NZSX), 채권거래(NZDX), 소자본 기업의 주식거래를 위한 대체 거래소(NZAX)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FMA 는 금융서비스 및 증권시장에 관련된 회사법, 증권 및 재무보고를 관리, 감독합니다.

6.11 FMA 는 선물 거래업자의 인가업무를 맡고 있으며 FMA 의 승인 없이는 선물(통상 옵션상품 포함)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NZX Ltd 는 규정에 따라 선물과 옵션거래업을 인가합니다.

7. 공정거래법 및 규정(Competition law and regulations)

7.1 상법 1986(Commerce Act 1986)은 소비자의 장기적 이익을 위해 시장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은 통상위원회(Commerce Commission)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불공정 행위나 거래를 금하고 있습니다.

- 경쟁을 심각하게 축소시키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있는 둘 이상 개인 또는 기업에 의한 집단행동과 경쟁자 배제행위 또는 가격 담합행위가 금지됩니다.
- 시장지배력(상당한 정도)의 악용과 자신이 공급하고 다른 기업이 판매하는 상품의 최저가를 지정하는 사람 또는 기업의 독단적 행위.

7.2 아래와 같은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 다른 법에 의해 승인된 행위
- 법인 아닌 동업관계의 사업파트너간 계약
- 고용계약에 따른 직원의 거래 제한이나 기업내의 주식 매각에 대한 경쟁금지
- 지적재산권.

- 7.3 상법은 시장의 경쟁을 심각하게 감소시키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인수합병을 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장(market)”은 뉴질랜드 상품과 용역을 거래하는 시장 또는 실제 상업적으로 그러한 상품과 용역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을 뜻합니다. 따라서 인수의 결과로 독단적인 영향력이 증가하거나 협력을 통해 영향력 증가가 있다면 그러한 기업인수는 시장경쟁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7.4 상법은 해당 기업 인수가 경쟁을 현저히 축소시킴으로써 관련요건을 위배하지 않는지를 위원회(계약이행 전)가 확인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거래가 시장의 경쟁을 심각하게 축소시키더라도 대중의 이익이 손해를 능가할 때는 승인될 수 있습니다.
- 7.5 동 법률의 위반에 따른 벌금은 개인 50 만 달러이고 기업은 1 천만 달러나 위반으로 취한 이득의 3 배 또는 회사와 그 자회사의 총매출의 10% 중 가장 큰 금액의 벌금을 부과하므로 뉴질랜드 기준으로 볼 때 매우 강력한 처벌입니다. 위원회는 상법 위반으로 밝혀진 거래를 취소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 7.6 상법은 특히 전력산업에 대한 규제도 포함합니다.

8. 지적재산권 보호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 및 특허

- 8.1 뉴질랜드의 지적재산권 보호법은 영국법과 관습법을 토대로 만들어져 있지만 뉴질랜드 정부는 디지털 및 전자기술 동향에 맞춰 저작권법에 대한 검토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 8.2 저작권법(Copyright Act 1994)은 독창적인 문학, 음악, 예술, 녹음, 영상, 통신 및 출판 인쇄물인 작품의 저작권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인간의 노동, 기술, 독립적 판단이 투입된 모든 작품에 존재하며 공표된 아이디어가 반드시 독창적이거나 새로운 형태가 아니어도 됩니다.
- 8.3 저작권은 작품 자체에 있으며 저자가 해당 작품의 창작을 위탁 받았거나 고용에 따라 생산된 것이 아니면 권리는 저자나 제작자에게 귀속됩니다. 뉴질랜드가 조인한 베른 협약(Berne Convention)에 따라 작품이 창작되는 즉시 저작권이 발생하며 등록되지 않아도 됩니다.
- 8.4 작품의 저작권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뉴질랜드에서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작품의 복제
 - 작품의 사본을 배포
 - 대중을 상대로 하는 작품의 공연이나 전시
 - 대중을 상대로 작품을 전파
 - 작품의 변경
 - 위 권리를 타인이 행사하는 것을 허가

- 8.5 문학, 드라마, 음악, 미술 작품의 저작권은 해당 작가의 생애기간과 사후 50 년간 지속됩니다. 저작권존재를 의미하는 © 의 표시는 의무는 아니지만 국제 협약에 따른 저작권 보호를 위해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표권

- 8.6 상표법(Trade Marks Act 2002)은 상표권 보호를 위한 장치를 제공하며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상표법이 보호하는 권리범위의 규정

- 상표권의 등록절차 기술
- 상표등록 대상의 규정
- 등록된 상표권의 집행절차 기술
- 저작권보호를 받는 작품의 무단 사용이나 상표의 무단 복제를 막는 절차
- 유명 상표의 보호

8.7 상표권법에 따른 상표등록은 등록일로부터 10 년간 유효합니다. 상표권은 신청자 또는 상표권 보유자가 만기일 전까지 상표권을 갱신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여 추가로 10 년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 8.8 디자인 법(Designs Act 1953)은 제품의 시각적 디자인을 이용하여 마케팅에 활용하는 독점적 권리를 보증합니다. 등록된 디자인은 허가 없이 타인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8.9 등록하는 디자인은 새로운 것이어야 하며 상품의 사용 또는 기능 외에 시각적 특징을 보유해야 합니다. 상품 생산 시 사용되는 시각적 특징을 지닌 형태, 배열, 무늬, 장식물이 디자인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 8.10 디자인 법에 따라 등록된 디자인의 권리는 최초 5 년간 보호되며 두 차례에 걸쳐 각각 5 년간 갱신권리를 가집니다. 국제적으로 디자인 권리를 보호받으려면 그 디자인이 사용되는 모든 국가에 등록해야 합니다.

특허

- 8.11 특허제도는 새로운 발명을 보호합니다. 발명은 독창적이고 유용하면서 같은 의도를 가진 다른 사람이나 해당 분야에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따라 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 8.12 새로운 제품, 제조 공정, 화학혼합물, 바이오 테크놀로지는 모두 특허 대상이며 약품이나 기계도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입니다.
- 8.13 발명품이 장기간 상업적으로 이익을 가져올 경우 특허등록의 신청은 효율적입니다. 특허는 발명자에게 20 년 동안 발명품의 제조, 판매, 사용의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며 특허기간이 경과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8.14 국제적으로 특허를 보호받으려면 특허가 사용되는 모든 국가에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이나 회사 이름의 불법사용

- 8.15 현재 뉴질랜드에는 사업명 등록제가 없습니다. 회사명은 회사법에 따라 등록되지만 이것이 회사명을 상표로 사용하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된 회사명을 브랜드나 상표로 사업할 경우 불법사용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 8.16 회사명의 불법사용은 영업권 보호에 관련되며 이를 규제하는 목적은 한 업체가 타 업체의 명성이나 영업권의 부당한 사용을 통해 이익을 추구할 때 발생하는 불공정 경쟁을 막는 것입니다. 공정거래법(Fair Trading Act 1986)이 영업활동에서의 거짓과 허위행동에 대해 유사한 규정을 담고 있지만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는 반면 회사명의 불법사용에 대한 규제는 불공정 경쟁에 따른 영업권 보호에 중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자주 함께 적용됩니다.

웹 주소와 도메인 이름

- 8.17 도메인 이름의 상표등록 신청은 이제 자주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도메인 이름의 상표등록을 허가할 때는 www, com 이나 co.nz 처럼 일반적 주소가 아니라 특별히 구분되는 상표부분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8.18 뉴질랜드 법원은 도메인 이름의 선점이 사업체의 권리보호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병행수입(Parallel importation)

- 8.19 저작권 수정법(Copyright Amendment Act 1998), 병행수입 금지 철회)은 병행수입법을 완화하여 저작권법의 저작권 '침해(infringing)'에 대한 정의를 수정하였습니다.
- 8.20 생산 장소, 생산 시점에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상품은 뉴질랜드 수입 시에도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가품이나 복제품의 수입은 여전히 금지되며 수정법에 따라 벌금도 증액되었습니다. 병행수입상품은 가품이나 복제품과 혼동되기도 하는데 병행수입품은 수입국의 지적재산권 보유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수입하는 대신 공급자를 통해 합법적으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한 것입니다. 가품이나 복제품은 지적재산권 보유자의 승인없이 생산되므로 저작권을 침해합니다.

9. 노동과 고용

최소요건

- 9.1 뉴질랜드는 근로자가 갖는 최소한의 법적 권리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고용관계법(Employment Relations Act 2000)은 고용기간 중 부당해고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휴가법(Holidays Act 2003)은 병가, 위로휴가, 연간 4 주의 정기 휴가와 크리스마스, 부활절 등 법정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 육아휴직 및 고용보호법(Parental Leave and Employment Protection Act 1987)은 최대 52 주간의 육아휴직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18 주간의 유급휴가를 포함하는데 급여는 정부가 보조합니다. 이 기간 중 고용주는 보통 해당 직책을 공석으로 두거나 임시 근로자로 충원할 수 있습니다.
 - 인권법(Human Rights Act 1993)은 성, 인종,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은퇴연령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권법은 또 성희롱과 인종희롱을 금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법(Minimum Wage Act 1983)은 근로자가 받는 최저 임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 평등임금법 1972(Equal Pay Act 1972)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남성과 여성의 임금이 같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임금보호법 (Wages Protection Act 1983)은 임금 지불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근로자의 서면 동의없이 임금의 공제를 금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Privacy Act 1993)은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접근, 사용 및 공개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 직장 보건안전법(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2015)은 직장 안전을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관계법(Employment Relations Act 2000)

- 9.2 고용관계법은 뉴질랜드의 노동 및 고용의 근간이 되는 법률입니다. 노동조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계약서보다 고용관계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고용관계법은 고용관계 당사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원칙은 고용주, 근로자 및 노동조합 간 업무에 적용됩니다.
- 9.3 일부 법률로 정한 최소요건이 있지만 고용계약 조건의 대부분은 고용주와 근로자간 또는 고용주와 다수 근로자를 대리하는 등록된 노동조합 간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9.4 고용관계법은 노동조합과 고용주간의 단체협약을 장려하고 있으며 이 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은 근로자와 노동조합 사이에서 체결된 계약을 의미하며 조합원 개인도 단체협약 조건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근로조건을 추가로 협상할 수 있습니다.

9.5 고용관계법은 고용계약서의 서면작성 원칙과 고용주가 서명된(또는 서명할 의도의) 고용계약서나 현재 유효한 고용조건을 담은 문서를 보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최소요건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의 종류

9.6 대다수 근로자는 고용계약서나 관련 법률에 의거 고용이 종료되지 않는 한 고용 종료 시기를 정하지 않은 영구 고용계약에 따라 근무합니다.

9.7 고용기간을 정하는 고용계약도 가능하지만 규제가 따릅니다. 고용을 시작할 때 고용주는 특정 일자 또는 기간이 경과하면 고용을 종료해야 할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고용 종료의 사유와 방법은 고용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고용하는 임시직(casual) 근로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9.8 고용계약에 근로자 수습기간을 포함할 수 있지만 엄격히 규제됩니다. 수습기간은 90 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기간이며 그 내용을 고용계약서에 반드시 기술하고 근로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이에 대해 근로자는 고용분쟁이나 법적 절차를 취할 수 없습니다.

분쟁해결

9.9 직장에서의 분쟁은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도중에 발생하는 문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분쟁의 대부분은 고용관계 문제 (employment relationship problems)로 관련법에 따라 처리되며 근로자는 소송사유 (부당해고 등)를 쟁점으로 하는 개인분쟁 (personal grievance)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9.10 고용관계법은 성공적인 고용관계를 지원하고 촉진합니다. 고용관계 당사자는 고용관계청(고용관련 문제를 조사하고 판단)의 개입을 요청하기 전 정부가 운영하는 중재절차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Health and Safety 보건 및 안전

9.11 직장 보건안전법(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2015)의 일차적인 목표는 회사가 직장의 보건안전 관리에 책임감을 갖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주체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근로자나 기타 인원이 사업장에서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보건과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주체(PCBU)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a) 회사
- (b) 파트너십
- (c) 기타 주체
- (d) 개인

9.12 보건안전법은 회사의 경영진(이사, 파트너, 기업운영에 큰 영향을 행사하는 인원)은 사업장이 보건안전법상 의무사항에 적합하도록 성실히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9.13 회사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보건안전 위해 요소로부터 인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보건 및 안전, 안전한 작업절차, 물질의 안전한 사용, 훈련규정, 지시 및 감독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유지하는 의무를 집니다. 회사는 보건안전 문제에 대해 근로자와 함께 노력하고 직장의 보건안전 개선에 근로자가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 9.14 보건안전법 위반 시 벌금, 배상, 징역 등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대상은 사안에 따라 회사나 경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고(Redundancy)

- 9.15 정당한 정리해고는 고용관계 종료의 합리적 사유가 되며 근로자의 업무가 기업에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해고에는 적법한 사업상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업무성이나 부적합행위, 부당행위 등을 사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 9.16 고용주는 통상 최종적으로 해고를 결정하기 전 대상이 될 수 있는 근로자와 대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해고의 경우 법으로 보상을 정하고 있지 않지만 고용계약서에 해고 시 보상하기로 정하였다면 보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고용계약서에 기술적 해고의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고 기술하는 경우가 있으며 고용주(회사 매각 시는 인수자)가 현재 직무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 조건을 근로자에게 제공할 경우 여기에 해당합니다. 고용계약서에 해고보상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고용주는 해고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9.17 기업의 매각이나 소유권 이전과정에서 정리해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주체를 통하여 사업을 지속할 의도로 회사를 매입했다면 기술적으로 볼 때 고용주가 변경되어 근로자는 해고상태가 됩니다. 이 때 매각된 회사의 근로자는 기술적 실업상태로 매수자가 고용결정권을 갖습니다(고용관계법에 따른 보호대상 근로자 제외). 회사의 주식만을(자산이 아닌) 타인이 매수했을 때 근로자는 동일한 회사에 의해 계속 고용되므로 실업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9.18 고용관계법은 근로자의 이전근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동 법에 따라 근로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취약 근로자(통상 청소나 요식서비스 분야 근로자)
 - 기타 근로자.
- 9.19 취약근로자는 동일 근로조건으로 새 고용주로 이전될 권리를 갖습니다. 19인 이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게는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9.20 취약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경우 사업을 지속할 목적으로 다른 구매자가 회사를 매입했다면 고용주는 반드시 현재 근로자의 고용에 대해 매수자와 협상해야 합니다. 모든 고용계약서는 해고 시 근로자 보호와 현 고용주와 새 고용주간 근로자 고용에 관한 협상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사고보상법(Accident Compensation Act 2001)

- 9.21 개인 부상에 대한 뉴질랜드의 보상체계는 독특합니다. 사고보상법은 1974년부터 뉴질랜드에서 시행되고 있는 무과실 사고보상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무에 관련되었거나 또는 관련되지 않은 부상 모두 사고보상공사(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를 통해 정부가 보상합니다. 이러한 보상제도가 존재하는 까닭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개인의 부상을 사유로 소송할 수 없습니다.

키위세이버(KiwiSaver)

- 9.22 키위 세이버는 고용주, 저축상품 판매자,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정부주도 저축제도로 키위세이버법 (KiwiSaver Act 2006)에 따라 운영됩니다.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뉴질랜드 사람들의 노후 재정 독립과 저축증대를 위해 만들어진 장기 저축 제도입니다.
- 9.23 키위세이버 가입자가 급여의 일정 부분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고용주는 급여의 3%에 상당하는 고용주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도급업자

- 9.24 도급업자는 근로자와는 법적으로 지위가 다릅니다.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려면 고용계약서와 관계의 실제 성격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계약서 내용과 무관하게 본질적으로 고용주와 근로자의 관계인 경우 고용주는 분담금을 내야 하며 계약관계로 판단될 경우 고용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10. 기타 상법

- 10.1 본 자료에서 설명한 내용에 추가하여 상업관련 주요 법률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회사법(Companies Act 1993)

- 10.2 뉴질랜드 회사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회사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한 회사법
- 회사와 기타 법인의 재무보고 요건을 규정한 재무보고법 (Financial Reporting Act 2013, 2.7 항 참조).

- 10.3 현재 회사법은 다음과 같이 이전의 회사법이나 대다수 영연방국가의 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 공공기업과 민간기업의 구분이 없습니다.
- 주주 1 인이 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주식 액면가, 주식자본금 유지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 회사의 정관(협동조합정관과 유사한)보유가 의무는 아니지만 정관이 있을 경우 회사법에 따라 규정을 정할 수 있어 회사운영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제고하므로 정관보유를 권장합니다.
- 주주배당이나 지정된 거래 전, 회사는 회사법에 명시된 "지불 능력의 검증" 요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 주주 및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회사는 자기 주식을 매입하고 주식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중요 거래 시 주주 75%의 승인이 필요합니다(통상 회사자산가치의 과반에 상당하는 거래).
- 75% 이상의 주주가 승인한 중요 거래에 반대하는 주주는 경우에 따라 회사로 하여금 자기 주식의 매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0.4 회사법은 회사와 임원의 권한, 이사의 의무, 회의와 청산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한합자회사법(Limited Partnership Act 2008)

- 10.5 본 법은 이전의 합자회사법(Partnership Act 1908)의 특별규정을 폐지하고 아래와 같이 현대적 합자회사 규정을 포함하여 2008 년 5 월 발효되었습니다.

- 뉴질랜드 기업이 외국 기업기업과 유사하게 유연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기업구조를 보유할 수 있게 합니다.
- 뉴질랜드의 벤처자본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킵니다.

금융시장규제법(Financial Markets Conducts Act 2013)

- 10.6 금융시장규제법(FMC 법)은 금융 상품의 개발, 판촉 및 판매 방법을 규정합니다. 또 금융 상품의 판매, 거래, 교환에 지속적으로 필요한 요건과 일부 금융 서비스의 규제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 10.7 FMC 법은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개별 투자자에 맞는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여 잠재 투자자에게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10.8 FMC 법은 내부 거래, 시장 조작, 대주주의 주식 보유현황 관련 문제의 공개와 이사 및 고위 경영진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인수법(Takeovers Act 1993)

- 10.9 뉴질랜드는 등록회사 즉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 12 개월 내 상장된 회사, 50 인 이상 주주로 구성된 회사의 경영권 이전에 따른 절차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 10.10 기업인수법(Takeovers Act 1993) 및 기업인수 규정에 의거 누구라도 20% 이상의 등록 회사의 주식 또는 의결권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경영인수위원회(Takeovers Panel)는 등록 회사의 인수에 관한 사항을 감독하며 규정적용을 면제할 권한도 있습니다.
- 10.11 개인이 20% 이상 회사 지분을 취득하거나 늘이려면 아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 등록 회사 주식의 전량 매입의사 표시
 - 전체 주주에게 부분적 매수의사를 공개하여 50% 이상의 의결권 획득(인수자와 무관한 주주는 그 보다 낮은 비율)
 -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주주의 승인
- 10.12 등록 회사는 주식의 가격을 포함하여 모든 주주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한 주주가 50% 이상의 주식 또는 의결권을 보유했을 경우 매년 5%까지 지분변경을 할 수 있고 회사가 이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규정 위반 시, 개인은 5 십만 달러, 법인은 5 백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전자상거래

- 10.13 계약 및 상법(Contract and Commercial Law Act 2017 , CCL 법) 제 4 장은 유엔의 국제무역법(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을 모델로 하는 전자상거래규정을 포함합니다. 동법 제 4 부는 상거래에 전자기술의 이용을 도입, 촉진하고 종이문서와 컴퓨터 정보가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10.14 이전의 전자상거래법(Electronic Transactions Act 2002)을 대체한 CCL 법 제 4 장은 종이문서를 일괄 배제하지 않고 관련 법률개념이나 절차와의 충돌을 피하면서 법률이 통신발전을 수용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CCL 법에 포함된 전자상거래 규정을 통해 기존의 법률요건을 변경하지 않고서도 상거래와 정보관리에 전자기술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 동 규정에 따라 전자 정보의 법적 효력, 문서전달 시간과 장소, 전자적 의사교환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과 둘째, 문서화, 서명, 문서보존과 관련된 법적 요건을 수용하면서 전자적 방법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 10.15 CCL 법은 종이문서의 법률적 요건에 상응하는 컴퓨터 기반 문서의 법률 요건을 정의하지 않는 대신 그러한 법률 요건을 전자공학 기술로 실현하는 방법과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CCL 법은 전자기술 외 전기, 디지털, 자기, 광학, 전자기, 생체 및 광통신 수단에 관한 규정도 포함합니다.

공정거래법(Fair Trading Act 1986)

- 10.16 공정거래법은 상품과 서비스의 판매 및 판촉의 모든 단계에 적용되며 고객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은 지정된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소비자 정보와 제품 안전 기준을 규정하며 판매자의 허위나 속임수 거래를 금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소비자 권리를 강력히 보호하고 있으며 동법 위반 시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Consumer Guarantees Act 1993)

- 10.17 소비자보호법은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규정합니다. 소비자보호법은 영업을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적용됩니다(제조, 수입 및 유통업자 포함).
- 10.18 소비자는 통상 개인 및 가정용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자로 구입한 상품과 서비스를 재판매 하거나 다른 제품 생산에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상품을 수리에 사용하거나 토지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 10.19 소비자보호법은 수리, 교체 및 환불 등 법적 보증사항과 시정조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또 규정에 따라 구매한 상품이나 서비스로 초래된 합리적 범위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에 위배되는 판매자와 소비자간 계약은 불법이며 그러한 행위에 대해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Privacy Act 1993)

- 10.20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 정보의 수집, 접근, 수정 및 공개와 관련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며 12 가지 정보보호 원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 판매, 마케팅, 신용관리 및 고용분야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개인재산 저당법(Personal Property Securities Act 1999)

- 10.21 개인재산 저당법은 개인재산에 대한 담보 확인 및 규제에 관한 절차를 규정합니다. “담보물권”은 금전의 지불,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수단으로 거래과정에서 생산 또는 제공되며 여기에는 상품 공급, 임대, 위탁, 1 년 이상 리스나 위탁에 따른 권리유보 등이 있습니다.
- 10.22 담보물권은 법률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지며 개인재산 담보등록사무소(www.ppsr.govt.nz)에 등록된 담보물권은 등록되지 않은 권리보다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며 등록된 담보물권 가운데는 먼저 등록된 권리가 우선권을 갖습니다. 등록 회사의 인수, 청산 시 자산은 우선순위에 따라 분배되지만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불을 목적으로 등록한 담보물권은 물품구매 담보물권(Purchase Money Security Interest)을 구성하여 최우선 순위(super priority)가 부여됩니다.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지원금지법(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ing Financing of Terrorism Act 2009)

- 10.23 이 법은 자금세탁이나 테러활동 지원을 위한 자금의 감시, 차단을 목적으로 회계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금융사업자, 카지노 포함). 동 법은 리스크 평가와 고객확인요건, 자금세탁 및 테러활동 지원에 대한 리스크 중심 대응과 감시,감독 및 이행절차를 규정합니다. 새로 도입된 민형사상 범죄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융사업자법(Financial Service Providers Act 2008)

- 10.24 동법은 모든 금융사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여 누구나 금융사업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면서 금융사업자를 통제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은 지정된 사람의 금융사업 경영 또는 의사결정의 참여를 금지하고 뉴질랜드의 국제 자금세탁 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권고사항 준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1. 이민

- 11.1 뉴질랜드 이민은 이민성을 통해 정부가 관리하고 있으며 비교적 빈번하게 규정개정이 이뤄집니다. 등록된 이민자문사가 최신 정보를 토대로 이민자문을 제공합니다.

입국요건

- 11.2 뉴질랜드로 입국하는 외국인(호주 제외)은 원칙적으로 뉴질랜드 입국 전 유효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정된 국가의 국민은 비자없이 최대 3개월까지 뉴질랜드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 11.3 이민자가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주권(residence visa)- 뉴질랜드에 영구적으로 거주하기 원하는 사람
 - 기업인 비자(entrepreneur work visa)- 뉴질랜드에서 직접 사업을 소유하고 운영하려는 사람 (최대 3년, 6개월 또는 2년 경과 후 영주권 신청가능)
 - 워크비자(work visa)-임시로 뉴질랜드 취업을 원하는 사람(최대 3년, 연장 가능)
 - 방문비자- 취업 외 임시 방문 목적의 비자(3개월씩 연장, 최대 9개월까지)
 - 학생비자- 임시 학업을 위한 비자(3개월 이상, 학업기간)

New Zealand residence 뉴질랜드 영주권

- 11.4 뉴질랜드 이민정책은 경제성장과 사회 통합을 목표로 하며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뉴질랜드의 인적자원 강화
 - 국제관계 강화
 - 기업혁신 촉진
 - 사회통합 유지.
- 11.5 이민정책은 사회적, 인도적 사유에 따른 규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 11.6 뉴질랜드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려면 영주권이 필요합니다.
- 11.7 뉴질랜드 영주권은 아래와 같이 여러 분야를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기술이민(Skilled Migrant) 카테고리 (점수에 따라 영주권 신청자격 부여)
 - 가족(Family) 카테고리(뉴질랜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의 가족)
 - 투자(Investor) 카테고리 (뉴질랜드 투자를 근거로 영주권 신청자격 부여)
 - 기업가(Entrepreneur) 카테고리(뉴질랜드내 사업체를 소유, 운영한 뒤 영주권 신청자격 부여)

상세 이민규정

- 11.8 투자이민에는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Investor Plus	Investor
투자액	1천만달러를 3년간 투자	3백만 달러를 4년간 투자
연령제한	없음	65세
영어요건	없음	평균 밴드 3 이상 IELTS 성적, 영어사용 환경 또는 영어 능숙한 자

최소 뉴질랜드 거주일수	-3년 투자기간 중 최근 2년간 매년 44일 -성장투자 분야에 250만 달러 이상 투자 시, 투자기간 중 80일(2년 및 3년 경과 시 증거자료 제출)	-매년 146일 -성장투자 분야에 75만 달러 이상 투자 시, 4년 투자기간 중 438일(2년 및 4년 경과 시 증거자료 제출)
사업경력	없음	최소 3년 이상

영주권 승인 후

- 11.9 영주권이 승인되면 카테고리에 따라 3년 또는 4년간 적합한 대상에 투자해야 합니다. 주신청자는 위 표에서 기술한 최소 거주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11.10 기술이민은 고학력, 경력, 잡 오피를 갖춘 신청자를 위한 점수제 이민입니다. 신청자는 여러 분야의 점수를 입력하여 이민의향서 (Expression of Interest)를 제출하며 점수가 높은 신청자는 영주권을 신청하라는 초청서를 받게 됩니다.
- 11.11 가족이민은 뉴질랜드 영주권, 시민권자의 해외 거주 가족을 위한 이민제도입니다. 뉴질랜드 영주권, 시민권자의 배우자, 파트너, 부모, 부양자녀, 형제의 경우 뉴질랜드 가족이 후원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1.12 기업가 카테고리는 규정에 따라 뉴질랜드에 유익한 사업의 성공적 운영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이민제도입니다. 이 카테고리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i)뉴질랜드에 사업체를 설립하고 최소 2년 이상 운영하거나 (ii)장기사업비자(long-term business permit)를 보유하고 뉴질랜드에 사업체를 설립, 운영하면서 50만 달러를 투자하고 3인 이상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풀타임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 11.13 가족 카테고리를 제외하고 모든 영주권 신청자는 건강과 캐릭터, 영어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2. 법률체계와 분쟁해결

- 12.1 합리적이며 일관성 있는 법률 체계는 외국에 큰 돈을 투자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뉴질랜드 법률은 영국 법률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국과 마찬가지로 “관습” 즉 판례를 바탕으로 하는 민법과 단원제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을 근간으로 하는 관습법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 12.2 최근 입법 시, 외국 특히 호주, 캐나다 등 영연방국가의 사례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법과 개인 재산담보법은 북미국가와 것과 유사하지만 공정거래법이나 상법은 호주의 무역법 (경쟁/소비자 법으로 변경)을 따르고 있습니다.
- 12.3 뉴질랜드의 사업관련 법률의 핵심은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명확한 계약법입니다. 본질적으로 상업 계약은 이행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았을 경우 보상이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일반적인 상업거래의 상식의 테두리 안에서 예외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 12.4 잘 조직된 사법체계와 함께 법의 집행도 중요합니다. 뉴질랜드 법원은 외국과 비교할 때 효과적,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법원 판사의 부패사례가 없습니다. 판사는 선거가 아니라 법무장관이 임명하며 좋은 평판과 경력 많은 신청 변호사 중에서 선발합니다.
- 12.5 뉴질랜드는 네 단계의 법원이 있습니다. 가장 낮은 법원은 지방 법원으로 20만달러 이하 소송을 심의할 수 있고 고등 법원은 금액 제한없이 모든 상업적 분쟁을 심의합니다. 세 번째는 항소법원, 네 번째로는 대법원이 있습니다. 지방 법원의 판결에 대해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고등 법원이나 항소 법원의 허가가 있을 때는 상급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허가를 받았을 때만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고등 법원은 법원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권을 갖고 행정법원이나 트라이뷰널의 판결이 편견, 관할권 없음 등 불합리한 판결이 이뤄지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12.6 그 외에도 다양한 전문 법원과 트라이뷰널이 있습니다. 작은 규모의 분쟁은 소액분쟁 트라이뷰널에서 심의하고 고용 문제는 고용 법원, 도시계획 및 환경 문제는 환경 법원, 뉴질랜드 원주민 마오리의 전통적 토지권(기타 전통적 권리)관련 분쟁은 1 차로 와이탕이(Waitangi) 트라이뷰널이 심의합니다. 일부 건설 분쟁은 누수주택 분쟁 서비스(Weathertight Homes Resolution Service)가 심의합니다.
- 12.7 소송은 통상 1 차적으로 12~18 개월 내에 판결이 이뤄집니다. 모든 법원은 즉석 또는 약식 판결을 할 수 있어 단순사건은 신속하게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사건관리, 자료 제출의 범위 및 성격, 심리 절차를 결정할 권리를 갖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에게 중재 등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명령을 할 수 없지만 판사의 도움과 감독하에 당사자간 협의를 통한 분쟁 해결시도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 12.8 뉴질랜드는 UN 외국중재판단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뉴욕 1958) 조인국으로 국내 및 국제 중재절차에 일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법원은 중재의 선례를 중시하며 사법 개입 최소화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합니다. 뉴질랜드에는 합리적이고 수준 높은 국내외 중재 전문가가 있습니다.
- 12.9 뉴질랜드는 국제 투자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ICSID 협약과 상품판매에 관한 국제협약 조인국으로 해당 분야의 국제적 기준을 준수합니다. 뉴질랜드는 법조계에서 글로벌 경제의 일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계약법 분야 사법통일국제기구(UNIDROIT)등 국제 법률조약과 협약에서도 뉴질랜드를 참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12.10 뉴질랜드 사업 환경을 처음 접하더라도 뉴질랜드 계약 법, 계약 집행, 법집행 절차는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3. 중요사항

- 13.1 본 자료는 2017 년 9 월을 기준으로 뉴질랜드 사업의 법적 측면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헤스켓 헨리는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으나 전문가의 조언없이 고객의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헤스켓 헨리가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웹사이트 www.heskethhenry.co.nz 에 방문해주세요.